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4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 2. 9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2005.12.30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(2006.1.11 시행)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“20세이상”을 “19세이상”으로 한다. 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4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20세” 를 “19세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, 연서하여야 할 최소 주민수는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<u>20세</u>이상 주민 180명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_____ _____ <u>19세</u>— _____</p>